

광주여자대학교 국가권역별 외국인 유학생 대표단 후보 모집

1. 모집 대상

본교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중 1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권역별 학생대표 활동이 가능한 자
※ 다만, 해당 권역 학생의 과반수 이상이 1학기 이하 재학자인 경우에는 1학기 이하 재학생도 지원 가능

2. 모집 권역

가. 권역 구성: 유학생 수, 문화권, 언어 및 운영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5개 권역으로 구성

구분	구성 국가	학생 수(명)
1권역	베트남	249
2권역	네팔	191
3권역	남아시아 : 방글라데시, 파키스탄, 인도, 미얀마, 스리랑카	62
4권역	중앙아시아 : 우즈베키스탄, 키르기스스탄, 몽골	63
5권역	동아시아 : 중국, 일본	20

※ 권역 구분은 엄밀한 지리적 분류보다는 유학생 수, 언어·문화적 유사성 및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, 국가별 학생 수 변동에 따라 향후 권역 구성은 조정 가능

3. 운영 내용

가. 임기 기간: 2026. 5. 1.(금)~2027. 2. 28.(일)

나. 선발 인원

- 각 권역별 대표 1명, 부대표 1명
- 필요시 10명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 추가 선발 가능

※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1위는 대표, 2위는 부대표로 선발

4. 대표단 역할

가. 외국인 유학생 의견 수렴 및 전달

- 권역별 유학생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수렴하여 국제교류처에 전달하고 개선사항 협의

나. 대학생활 적응 지원

- 신입 유학생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
- 수강신청, 학사일정, 증명서 발급 등 기본 정보 안내 보조

다. 유학생 유치 홍보

- SNS(인스타그램, 페이스북) 홍보, 국가별 홍보 자료 제작

라. 국가별 행사 및 프로그램 기획·홍보

마. 유학생 네트워크 형성

바. RISE 사업 활동 참여

5. 선발 방식

- 학생 투표 점수 70%+국제교류처 면접 점수 30%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

가. 세부 추진 일정(안)

일자	내용	비고
2026. 4. 13.(월)~4. 17.(금)	선거일정 공고 및 지원서 접수	
2026. 4. 20.(월)~4. 24.(금)	후보자 홍보기간	
2026. 4. 27.(월)~4. 28.(화)	권역별 학생 투표 및 국제교류처 면접	투표: 구글폼 진행 면접: 국가별 담당자 협조
2026. 5. 1.(금)	최종 선발 및 위촉	

6. 지원 방법

가.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**홍보자료로 활용**할 지원서 작성하여 제출

나. 지원서 포함 내용(자유양식)

- 사진 1장
- 자기소개
- 지원동기
- 본인이 대표단에 적합한 이유
- 활동 계획과 포부 등

다. 제출 기한: 4. 17.(금), 18:00

라. 후보자 홍보기간 중 제출 지원서 인쇄·부착을 통한 홍보 실시

7. 활동비

가. 활동비는 권역별 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고, 각 권역은 배정된 활동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

나. 활동에 따른 증빙은 국제교류처에 제출

국가권역별 외국인 유학생 대표단 규칙(세칙)

2026. 4. 7.

제 1장 총칙

제1조(명칭)

본 조직은 광주여자대학교 국가권역별 외국인 유학생 대표단이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

본 대표단은 외국인 유학생 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, 대학생활 적응 지원, 학교 홍보, 문화 교류 활성화 및 학교와 유학생 간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소속)

본 대표단은 광주여자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기반으로 구성되며, 국제교류처와 협력하여 운영한다.

제 2장 회원

제4조(회원 자격)

본 대표단의 회원은 광주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한다.

제5조(회원의 권리)

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1. 소속 권역 대표단 선거에 참여할 권리
2. 대표단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
3. 대표단 임원에 지원할 권리
4. 대표단을 통해 학교에 건의사항을 전달할 권리

제 3장 조직

제6조(권역 구성)

대표단은 다음 5개 권역으로 구성한다.

1. 베트남 대표단
2. 네팔 대표단
3. 남아시아 대표단(방글라데시, 파키스탄, 인도, 미얀마, 스리랑카)
4. 중앙아시아 대표단(우즈베키스탄, 키르기스스탄, 몽골)
5. 동아시아 대표단(중국, 일본)

※ 권역 구성은 학생 수, 국적 분포 및 운영 여건에 따라 국제교류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제7조(구성)

각 권역별 대표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대표 1인
2. 부대표 1인

필요시 국제교류처와 협의를 거쳐 권역별 운영위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.

제8조(임원의 임기)

- ①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당선 발표일로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- ②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차기 대표단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, 현 임원의 임기는 후임자 선출시까지 연장될 수 있다.

제9조(임원의 직무)

- ① 대표는 해당 권역 대표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1. 권역별 학생 의견 수렴 및 전달
 - 2. 국제교류처와의 협의 및 소통
 - 3. 권역별 회의 주관
 - 4. 행사 및 프로그램 기획·홍보 및 참여 독려
 - 5. 신입 유학생 적응 지원
 - 6. 학교 홍보
- ②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, 대표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운영위원이 있는 경우 대표단 업무 지원, 행사 운영, 홍보, 통역·번역 지원, 민원 취합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.

제4장 선출

제10조(선출 원칙)

대표단 임원은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서 접수, 후보자 홍보기간, 학생 투표 및 국제교류처 면접을 거쳐 선출한다.

제11조(지원자격)

- ① 대표 및 부대표 후보자는 본교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중 1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권역별 학생대표 활동이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.
- ② 후보자는 소속 권역 학생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고, 책임감과 성실성을 갖추며, 한국어 또는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여야 한다.
- ③ 다만, 해당 권역 학생의 과반수 이상이 1학기 이하 재학자인 경우에는 1학기 이하 재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평가방법)

- ① 선출 평가는 학생 투표 점수 70퍼센트, 국제교류처 면접 점수 30퍼센트를 반영한다.
- ② 학생 투표와 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권역별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.

제13조(대표 및 부대표 선출)

- ① 권역별 최고 득점자를 대표로 선출한다.
- ② 권역별 차순위 득점자를 부대표로 선출한다.
- ③ 대표와 부대표는 별도 구분 모집 없이 동일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.

제14조(재선출)
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교류처는 재선출을 실시할 수 있다.
- 1. 지원자가 없는 경우
 - 2.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3. 대표 또는 부대표가 임기 중 사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

제5장 회의

제15조(회의의 종류)

대표단 회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정기회의
2. 임시회의
3. 권역별 회의

제16조(정기회의)

정기회의는 학기 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7조(임시회의)

다음 각 호의 경우 국제교류처 또는 대표단 협의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1. 긴급한 학생 민원이 발생한 경우
2. 주요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경우
3. 기타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8조(권역별 회의)

- ① 권역별 회의는 각 권역 대표가 소속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, 권역 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할 수 있다.
- ② 권역별 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, 정기회의 개최 전 사전 의견수렴 절차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6장 임원의 해촉 및 자격상실

제19조(해촉 사유)

대표 또는 부대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교류처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자진 사퇴한 경우
2. 휴학, 자퇴, 제적 등으로 재학 자격을 상실한 경우
3. 회의 또는 공식 활동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참한 경우
4. 타 학생에 대한 폭언, 비방, 차별 행위를 한 경우
5. 선거 또는 활동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
6. 대표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

제20조(자격상실 및 승계)

- ① 대표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부대표가 대표 직무를 승계할 수 있다.
- ② 부대표 결원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재선발할 수 있다.
- ③ 동일 권역 내 추가 승계가 어려운 경우 국제교류처가 별도의 절차를 정할 수 있다.

제7장 재정 및 지원

제21조(재정의 구성)

대표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, 학교 지원금, 후원금, 기타 승인된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.

제22조(예산 집행)

- ① 대표단 관련 예산은 국제교류처와 협의하여 집행한다.
- ② 모든 지출은 대표단 운영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.

③ 모든 지출 내역은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.

제23조(회계 관리)

대표단 운영에 따른 예산 사용 내역은 국제교류처에 보고하여야 하며,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.

제8장 보칙

제24조(세부 운영사항)

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교류처와 대표단 협의를 거쳐 정한다.

제25조(규칙의 개정)

이 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처의 검토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부칙

1.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